

별 첨

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

2026. 7. 16

관계기관 합동

목 차

I . 그간의 경과	1
II . 개선방안	2
1. 시장 내 과열 경쟁 완화	2
2. 괴리율 관리 등 투자자 보호 체계 개선	3
3. 수요 안정을 위한 투자 요건 강화	4
III . 향후 일정	6

I. 그간의 경과

-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투자자 선택권 다양화 및 국내-해외 간 비대칭 규제 해소 등 국내 자본시장 체질개선 차원에서 도입
 - 국내 투자자들이 이미 별도의 투자자 보호 장치 없이 다양한 해외상장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하고 있었던 상황
 - * 홍콩 CSOP는 삼성전자('25.5.28), 하이닉스('25.10.16) 추종 $\pm 2X$ 상품을 HKEx에 상장
- 5.27일 출시 이후 기초자산 가격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, 높은 관심 등으로 시가총액 및 거래대금이 단기간 급증
 - **(시가총액)** 16개 종목 5.27일 4.4조원 상장 → 7.15일 11.9조원으로 확대(전체 ETF의 약 2.5%, +7.5조원)*
 - * 7.14일 기준 美 테슬라 레버리지(TSL) ETF는 약 41.9억\$(6.2조원)/ 홍콩 국내주식 레버리지 ETF는 약 17.5조원
 - **(거래대금)** 5.27일 10.4조원 → 7.15일 13.0조원(전체 ETF의 약 38.2%)으로 회전율 100% 상회
 - * 단일종목 상품 투자자별 거래비중(7.15일) : 개인 36.9% / 기관 18.3% / 외국인 42.3%
 - ※ (홍콩상장 ETF 국내투자자) 5.27~7.13일 3,089억원 순매도, 7.13일 1,813억원 보유
- 다만, 급속한 규모 확대로 다양한 우려와 보완 필요성이 제기
 - **(시장 변동성)** 상품 출시 전후 전세계적으로 확대된 주요 메모리 반도체 기업 관련 주가변동성 추가 증가 우려
 - * 5.26~7.10일 주요 메모리 반도체(DRAM, 낸드) 기업 주식변동성(일간수익률 변동성 연율화) : (美 샌디스크) 131% (美 마이크론) 123% (日 카옥시아) 118% (SK하이닉스) 113% (삼성전자) 96%
 - * 코스피 대비 삼전.하이닉스 시총 비중(%) : ('25말)34 ('26.4말)41 (5.26)49 (7.15)52
 - **(시장쏠림)** 상품 출시 전후 반도체 종목으로 자금쏠림 발생 우려
 - **(투자자 손실)** 기초주식의 변동성이 높아 단기에 손실이 크게 확대될 수 있으며, 변동성 잠식* 위험도 존재
 - * 기초자산이 같은 수준으로 오르고 내리더라도 손실 발생('음의 복리효과')
 - **(시장영향)** 장 마감시 리밸런싱이 집중되며 기초자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, 관리소홀로 괴리율이 크게 확대

II. 개선방안 ※ ETF-ETN 동일 적용

[기본 방향]

- ◆ 그동안 제기된 문제를 바탕으로 **투자자 보호와 시장안정, 시장 효율성 제고**를 **균형 있게** 고려하여 보완방안을 마련
- ◆ 과도한 시장 위축이나 투자자의 투자기회 상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하게 보완방안을 추진
- ◆ 보완방안 시행 이후 **시장 영향과 투자자 보호** 효과를 **지속적으로 점검**하고, 필요시 추가 보완방안 검토·시행

1 시장 내 과열 경쟁 완화

[1] 단일종목 상품 관련 신규상장 잠정 중단

- **(현행)** 8개 운용사가 16개 종목의 ETF(14개 레버리지, 2개 인버스), 1개 증권사가 2개 종목의 ETN(2개 레버리지)을 상장·거래중
- ⇒ **(개선)** 시장이 안정화되기 전까지 현재 상장되어 있는 상품 외에 추가 상장 잠정 중단(인버스, 커버드콜 포함)

※ [필요조치] 거래소 안내·지도 → 즉시 시행

[2] 단일종목 상품 관련 광고 금지

- **(현행)** 분산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특성을 감안하여 자율규제로 상품명 및 광고에서 ETF 표현 사용을 제한
- ⇒ **(개선)**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증권사·운용사 등의 광고 및 이벤트성 마케팅을 금지, 행정지도로 명확화

※ [필요조치] 금감원 안내·지도 → 즉시 시행

2 괴리율 관리 등 투자자 보호 체계 개선

[1] 증권사(LP) · 운용사의 괴리율 관리 책임 제고

□ (현행) 증권사(LP)는 괴리율 관리의무를 부담*

- ETF 괴리율이 일정수준(괴리율 관리의무 3%×2배=6%)을 반복 초과시 3단계(적출 → 지정예고 → 지정)를 거쳐 투자유의종목** 지정

* ① 스프레드비율[=(매도가-매수가)/매수가] 2%(해외3%) 초과시 호가제출의무
(09:00-09:05, 15:20~15:30 단일가매매시간 중 호가제출의무 면제),
② 괴리율 3%(해외기초자산은 6%) 이내로 괴리율관리 의무

** 지정시 3매매일간 매 30분마다 단일가매매(T+3일 괴리율 9%이상시 익일 거래정지 후 단일가매매 재개)

⇒ (개선) 급격한 괴리율 확대가 나타나지 않도록 LP의 괴리율 관리의무·페널티 강화, 운용사의 관리책임 제고(全 ETF·ETN)

- ① LP의 종가 괴리율 관리의무 기준을 2%(해외 5%)로 강화
- ② 증권사가 고의·중과실로 괴리율 관리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신규 종목 유동성공급업무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 마련
- ③ 운용사가 운용중인 ETF가 적정괴리율을 위반한 경우 신규 ETF 상장 제한 검토 → 운용사의 적극적 LP 관리 유인 부여
- ④ 괴리율 급상승에 따른 투자자 보호의 적시성 확보를 위해, 투자유의종목 지정절차를 2단계(적출 및 지정예고 → 지정)로 축소

※ [필요조치] 거래소 규정·세칙 개정 → 8월 중 시행

[2] 투자자 위험안내 강화

□ (현행) 단일종목 레버리지 관련 유의사항을 소비자경보 등을 통해 안내중이나, MTS(Mobile Trading System)에서 안내가 부족하다는 지적

⇒ (개선) 현재 손실률, 중장기 보유시의 위험 등을 주기적으로 푸시알림·안내톡 등을 통해 안내(opt-out)하도록 강화

-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소비자 경보단계 격상(주의^{6.19일~} → 경고 → 위험)

※ [필요조치] 금투협·금감원 안내 및 증권사별 전산 개발 → 8월 중 시행

[3] 사전교육 추가 내실화

□ (현행) 투자(국내+해외 단일종목) 前 기본교육(1시간) 및 심화교육(1시간) 이수

⇒ (개선) 심화교육을 추가(1시간→2시간)하고 교육내용 평가 강화*

* 챕터별 중간평가 확대(4챕터×2문제→3문제), 일정점수(60점) 미달시 해당 챕터 재학습 의무

※ [필요조치] 금투협 전산 개발 → (교육확대) 8월, (평가강화) 7월

3 수요 안정을 위한 상품 투자 요건 강화

[1]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(ETF·ETN) 관련 기본예탁금 강화

□ (현행) 국내·외 레버리지 상품 투자하는 개인(전문투자자 제외)은 거래소(국내) 및 협회 규정(해외)에 따라 기본예탁금 의무 예치

○ 신규 매수시에는 1천만원 이상(2단계 이상) 필요

* 증권사는 투자자별 거래경험·신용상태 등을 감안하여 기본예탁금을 추후(통상 3개월) **상향**(^{3단계}1~3천만원) 또는 **하향**(^{1단계}면제~1천만원) 적용 가능

[레버리지 상품 기본예탁금 단계 구분]

구분	1단계(완화)	2단계(기본)	3단계(강화)
금액	면제 ~ 1천만원 ^{미만}	1천만원	1천만원 ^{초과} ~ 3천만원 ^{이하}
비고	우수고객 등	계좌 최초 개설시	신용불량자 등

○ 계좌내 현금 뿐만 아니라 주식·ETF(레버리지 ETF 제외)·채권 등 대용증권의 대용가액(시가의 70% 내외)을 기본예탁금 산정시 포함*

* [예] 투자자가 1,500만원 상당 주식 보유시 예탁금 보유액을 1,050만원으로 인정

⇒ (개선) 국내·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예탁금 요건 강화

○ 기본예탁금을 3천만원으로 상향하고, 대용증권 미인정

- 신규 투자자 뿐만 아니라 기존 투자자의 추가매수시에도 적용
- 증권사별로 운영중인 거래경험에 따른 완화 금지

- 국내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뿐 아니라 해외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도 동일 적용(국내 주식 기초여부 불문)

	국내주식 기초	해외주식 기초
국내상장	○ * 예: 국내출시 SK하닉 단일종목 레버리지	○ * 출시사례 없음
해외상장	○ * 예: CSOP SK하닉 2배 레버리지	○ * 예: 디렉시온 테슬라 2배 레버리지

-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국내외 상장여부에 따른 차별이 바람직하지 않고 해외 상품으로의 풍선효과 등 방지 필요

※ [필요조치] (기본예탁금 상향) 거래소 세칙 개정, 금투협 규정 개정, 거래소 가이드라인 개정, 증권사별 전산 개발 → 8.5일경 시행
(대용증권 미인정) 거래소 규정 개정, 증권사별 전산 개발 → 8.19일경 시행

[2]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관련 매매수량 단위확대

- (현행) 기초주식가격 대비 1주(좌)의 가격이 낮아* 적은 비용으로 투자 가능

* 통상적인 일반 레버리지 ETF의 발행가격과 동일한 2만원으로 발행

[기초주식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간 1주(좌)당 가격 비교(단위: 만원)]

구 분	5.27일(종가)		7.15일(종가)	
	기초주식	단일종목레버리지*	기초주식	단일종목레버리지*
삼성전자	30.7	2.2(7.1%)	27.9	1.5(5.6%)
SK하이닉스	224.3	2.7(1.2%)	208	1.8(0.9%)

* 시가총액이 가장 큰 상품을 기준으로 비교

⇒ (개선) 단일종목 상품의 매매수량단위 확대(현행 1좌 → 20좌^{잠정*})

* 기초주식 대비 가격비율 일부 현실화(삼성 5.6% → 112%, 하이닉스 1% → 20%)

- 기존에 보유중인 단주의 처리를 위한 절차 세부사항(단주 매매 단가 등) 마련

※ [필요조치] 거래소 세칙 등 개정, 거래소 등 전산 개발 → 11월경 시행

Ⅲ. 향후 일정

□ 조속한 시장 안정을 위해 사안별로 신속하게 추진

- 업권 자율적으로 규정 개정 및 시스템 개발 없이 즉시 추진할 수 있는 과제는 발표 즉시 추진
- 규정 개정 및 시스템 개발이 필요한 과제는 8월부터 순차시행
-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기한 내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지 못한 증권사에 대해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신규 거래 제한 권고

□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,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전문가와 투자자 등과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추가 조치 검토*

- * (예) ① 주기적 재교육 및 선행 투자경험요건 신설 등 투자자 진입요건 추가 상향검토
 ② 괴리율 관리 강화(종가→상시관리, 괴리율 확대 지속시 상장폐지 요건에 반영),
 ③ VI 발동시 MTS 안내 등 VI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 검토 등

- 코스닥 시장 활성화, 장기투자 유도, 혁신적인 금융투자상품 도입 등 자본시장 체질개선 노력은 지속

<과제별 필요조치 사항 및 추진일정>

추진과제		조치사항	일정
① 시장 내 과열 경쟁 완화			
■ 신규상장 잠정중단		거래소 안내·지도	즉시
■ 광고 전면금지		금감원 안내·지도	즉시
② 괴리율 관리 등 투자자 보호 체계 개선			
■ 증권사·운용사 괴리율 관리 책임 제고		거래소 규정·세칙 개정	8월 시행
■ 투자자 위험안내 개선		금투협 지도·안내 증권사별 전산 개발	8월 시행
■ 사전교육 추가 내실화	교육확대	금투협 전산 개발	8월 시행
	평가강화		7월 시행
③ 수요 안정을 위한 상품 투자 요건 강화			
■ 기본예탁금 강화	금액상향	거래소 규정·세칙, 금투협 규정 개정, 증권사별 전산 개발	8.5일경 시행
	대용증권 미인정		8.19일경 시행
■ 매매수량 단위확대		거래소 세칙 등 개정, 거래소 등 전산 개발	11월경 시행